

수원지방법원 2016. 4. 26 선고 2015가합63896 판결 [소유권경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6. 3. 22.

판결 선고 2016. 4. 2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
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/5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
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
나. 6,985,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5. 27.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20%, 그 다음날부터 다
값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4.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6,985,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
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는 연 20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원고, 피고, C, D, E(이하 위 세 명을 '나머지 상속인들'이라 한다)은 망 F의 자녀들이다. 원고와 피고, 나머지 상속인들은 F이 2012. 7. 2. 사망하자, 2012. 10. 10. 그 소유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법정상속비율대로 각 1/5지분씩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.

나. 원고, 피고, 나머지 상속인들은 2012. 10. 23. 피고의 지분을 2/5로 나머지 상속인들은 각 1/5로 하는 상속협의분할서를 작성한 후, 2012. 11. 1.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는 2/5 지분으로, 나머지 상속인들은 각 1/5 지분으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경료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1, 2, 3, 을 제1호증의 1, 3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대하여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지분을 2/5로 하는 소유권 경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, 피고의 지분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/5지분에 관한 소유권 경정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무효이고, 상속에 의하여 위 1/5지분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,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수익금 중 원고의 분배금을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갑 제2 내지 5호증, 제7호증의 1, 2, 제22호증의 1, 4, 제30, 33, 36호증, 을 제2호증의 7, 제4호증의 1, 2의 각 기재, 증인 E의 증언, 증인 G의 일부 증언,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① 원고와 피고, 나머지 상속인들은 2012. 10. 10. 위 상속등기 경료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각자

1/5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2011년 부동산에 대한 평가 합의금액은 11억 원으로 정하며 지분탈퇴자에 대한 지분금액은 일시에 지급하고, 이익의 배분은 지분율에 따른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, ② 피고와 나머지 상속인들이 위 상속협의분할서 작성 당시 원고에게 지분포기나 양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, 피고와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서 피고만이 나머지 상속인보다 2배의 상속지분을 상속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사실, ③ 원고는 2012. 10. 30. 상속경정등기 비용 388,000원을 부담한 사실, ④ 원고와 나머지 상속인들이 2013. 1. 20. 이 사건 부동산의 4층을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한 계약서에 원고가 임대인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실, ⑤ 원고는 2011. 9. 6. 전 남편 H과 이혼 후 재산분할과정에서 그로부터 강원 평창군 I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, 2013. 1. 4. 피고의 남편 G에게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준 사실, ⑥ 위 H의 채권자 J은 2013. 4. 16. H과 원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. 9. 11. 원고와 J 사이에 조정이 성립된 사실, ⑦ 원고는 2013. 10. 23. 위 G와 'K에 있는 B의 지분 중 20%는 A의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.'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, 2013. 10. 27. 피고와 '서울 중랑구 K호 B의 총 지분 중 20%는 A에게 권리가 있음을 위 두 사람이 확인한다'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, ⑧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수익금을 관리하는 E은 2013. 2. 4.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익금 배분 명목으로 원고, 피고, C에게 각 6,434,000원을 송금하였고, 2013. 3. 4. 같은 명목으로 원고, 피고, D, C에게 각 551,470원을 송금한 사실, ⑨ 원고는 2013. 3. 7. E에게 위 배분금 6,985,470원(=6,434,000원+551,470원) 때문에 자금추적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, 피고에게 위 배분금을 송금해 달라고 하면서 E의 계좌로 위 배분금을 이체하였고, 그에 따라 E은 2013. 3. 11. 피고에게 위 금원을 송금한 사실, ⑩ 이 사건 부동산의 2012. 10.경 감정가액은 약 10억 원에 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.

앞서 인정된 사실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, 즉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상속지분가액은 최소 2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경정등기 비용을 부담하면서 피고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고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이전해 줄 만한 당사자간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, 오히려 H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 면탈을 하려는 의도로 명의를 이전해

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, 원고는 이 사건 경정등기 이후에도 자신의 지분권에 대한 수익금을 분배받는 등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있지 않은 점, 원고가 피고 및 G와 사이에 작성한 위 각 합의서는 그 작성경위, 문구의 전체적인 내용, 당사자 간의 거래관계 등으로 볼 때 피고와 사이에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, 원고는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1/5에 관하여 소유권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피고 명의의 등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, 원고와 피고 사이의 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소유권 경정등기는 무효이므로, 피고는, 망 F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/5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/5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 또한,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 수익금 중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분배금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,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6,985,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일 다음날인 2015. 5. 27.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, 원고가 H의 채권자들로부터 사해행위취소의 소 등을 제기당하지 않으려고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를 얻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경정등기를 마쳤으므로, 이 사건 경정등기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주장의 사유로 이 사건 경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,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경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. 따라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이정권

판사권세진

판사백주연

별지